

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·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(안)

의안
번호 244

제출년월일 : 2002. 1. 26.
제출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서 서초구민의 쾌적하고 수준높은 삶의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제정등 날로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입법활동 및 의회관련 각종 소송사항등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·법률고문을 두고, 관련사안의 자문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조례목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조)
-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함. (안 제2조)
-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을 규정함. (안 제3조)
- 입법·법률고문의 위촉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)
- 입법·법률고문의 고문료 및 회의비 지급을 규정함. (안 제8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15조
- 나. 지방자치법 제35조
- 다. 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운영조례

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·법률고문운영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입법·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·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직무) ①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
 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
 3.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·처리·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
 4.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
 5.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
- ② 입법·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조 (정원)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.

제4조 (위촉) ① 입법·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.

② 입법·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법·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.

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5조 (해촉) 의장은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3.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4.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
5. 입법·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제6조 (임기)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재임촉할 수 있다.

제7조 (회의) ①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·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회의에 참석한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고문료 및 회의비)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지방자치법 〉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35조 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〈개정

1994. 3. 16, 1999. 8. 31〉

1. 조례의 제정 및 개폐
2. 예산의 심의 · 확정
3. 결산의 승인
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· 수수료 · 분담금 ·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5. 기금의 설치 · 운용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· 처분
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· 처분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11.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〔시행일 2000. 3. 1 : 제35조〕

〈서울특별시의회입법·법률고문운영조례〉

1998. 09. 25 조례 제3519호 (제정)

1999. 03. 20 조례 제3587호 (개정)

제1조 (목적)

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입법·법률고문을 두고 입법·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직무)

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
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
3.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

4. 의회운영 및 의암십사·처리,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

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
2.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잽송사건의 소송수행
3.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

③ 입법·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

④ 입법·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잽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조 (정원)

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은 10인 이내로 한다.

제4조 (위촉)

- ① 입법 ·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- ② 입법 ·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입법 ·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.
-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 ·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받은 후 위촉장(별지 제2호 서식)을 교부한다.

제5조 (해촉)

- ① 의장은 입법 · 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 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 2.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 3.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 4.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
 5. 입법 ·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 6.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6조 (임기)

입법 ·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 (협의)

의회의 공보실장, 각 담당관,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 (회의)

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·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(고문료·회의비지급)

- ①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
- ②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은 서울특별시입법·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

제10조(소송수임료 등)

입법·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